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
조례안

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56
----------	-----

2022. 1. 26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월 21일

-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중근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금연구역의 지정(안 제3조)
 - 도시공원,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 -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, 주유소
- 금연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- 과태료(안 제7조)
- 권한의 위임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이덕항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, 변경 및 해제, 표시,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※ 17개 광역시·도 중 금연조례 **미제정** 지역(5): 인천, 대구, 세종, 강원, **충북**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,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(흡연, 간접흡연, 금연구역)에 대해 정의함.
- 안 제3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- 이는,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체위임 사항을 규정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에 따른 것임.
 - 같은 조 제1항은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도시공원, 절대보호구역,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, 주유소⁸⁾를 명시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- 같은 조 제2항에서,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.
- 또한,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연구역 지정 시 해당 시장·군수와 협의토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, 금연구역의 지정이 지방자치단체(도 뿐만 아니라 시·군 포함)위임사무로 현재 충청북도 내 11개 시·군 중 음성을 제외한 10개 시·군에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고, 금연구역 장소가 시·군 소재임을 고려할 때,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함.
- 다만, 충북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「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」에 따라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도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,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“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”가 설치·운영 중임. 이에 주민의견 수렴의 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 시 본 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도 검토 필요성이 있음.
 - ※ 경기도의 경우, 금연구역 지정 시, 「국민건강증진법」과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라 설치된 “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”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⁹⁾하고 있음.

- 안 제4조 및 제5조는, 금연구역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는,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 활동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와 사업 수행의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8) 가스충전소의 경우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사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.

제49조(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)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9) 「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」 제8조(금연구역 지정 방법)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·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 또는 설명회, 설문조사,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「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- 안 제7조 및 제8조는,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 권한의 시장·군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과태료 부과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것이며, 사무의 위임도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에 따라 위임이 가능하며,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장, 군수에게도 위임된 바 문제가 없음.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34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, 변경 및 해제, 표시,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조례안 예고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」

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

의안
번호

956

제출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금연구역의 지정(안 제3조)
 - 도시공원,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 -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, 주유소
- 금연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- 과태료(안 제7조)
- 권한의 위임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흡연”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.
2. “간접흡연”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 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금연구역”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(금연구역 지정 등) ① 도지사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

4. 주유소

5.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, 해당 시장·군수와 협의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지정되면,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금연구역 변경 등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5조(금연구역 표시)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, 규격,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교육 및 홍보)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과태료)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8조(권한의 위임)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의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
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4. 법 제34조제3항(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: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규정한 금연구역 외 구역 추가 지정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교육·홍보 추진

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금연교육 및 홍보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, 필요사업 홍보방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

나. 추계결과 : 250,000천원(향후 5년간)

구 분	홍보사업 추진
가. 재정수반요인	금연 홍보·교육
나. 추계의 전제	홍보 방법 및 규모
다. 추계결과	대상 : 도민, 예산 : 250,000천원
라. 재원조달방안	국비 50%, 도비 50%

※ 금연 홍보는 국비 매칭사업(기금 50%. 도비 50%)으로 도민이 대상이며, 전광판, 케이블TV, 버스광고 등 매체 및 캠페인을 통해 홍보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세 출	2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

작성자 :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우 경 수